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약관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약관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제 3 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제 4 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제 5 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 제 6 조 【계약의 성립】
- 제 7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8 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 제 9 조 【보험기간】
-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
- 제 11 조 【단위보험】
- 제 12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 제 14 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제 15 조 【해지환급금】
- 제 16 조 【계약의 승계】
- 제 17 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 제 18 조 【배당금의 지급】
- 제 19 조 【소멸시효】
- 제 20 조 【해지시 구비서류】
- 제 21 조 【분쟁의 조정】
- 제 22 조 【관할법원】
- 제 23 조 【약관의 해석】
- 제 2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 2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 26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 27 조 【준거법】
- 제 28 조 【약관의 변경】
- 제 29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 29 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퇴직연금 이월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 3 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 제 4 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6 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7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 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제 8 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제 10 조 【보험료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제 11 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 12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별표 1(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방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 일 적용하고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년 2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 14 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의 경우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15 조 【해지환급금】

-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 가격조정률(별표 2 “시장가격조정률” 참조)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 16 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제 17 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제 18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 19 조 【소멸시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 20 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 13 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21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22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 2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6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의 경우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 27 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 2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제 29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1)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적용방식

1. 공시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 확정급여형 ]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 ]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2.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 번째 영업일로부터 14 번째 영업일까지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5.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시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4.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3)의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별표 2)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을 적용합니다.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1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 + i_j}{1 + i_h} \right)^{n + \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i_j > i_h$  인 경우 또는 보험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합니다.

(2) 2년, 3년, 5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left( \frac{1 + i_j}{1 + i_h + 0.5\%} \right)^{n + \frac{m}{12}}$$

MVA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합니다.

$i_j > i_h + 0.5\%$  인 경우 또는 보험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합니다.

주)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미만 절상)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text{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합니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의 공시기준이율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3.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공시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